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

발의년월일 : 1995. 7.

발 의 자 : 엄태영의원

의 6 원

1.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 조례제명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천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함.
-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활동비용으로 월350,000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지급토록 함.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예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 「별표5」
-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지급) 의원이 회기중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350,000원으로 하고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하다.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제천시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천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 부의장	1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의원	2 등 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비 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제천시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회 여비 지급 기준표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의 장 부 의장	<input type="radio"/> 2등급 이상의 동급구별이 있 는 경우에는 최 상등급의 철도 임	<input type="radio"/> 2등급 이상의 동급구별이 있 는 경우에는 최 상등급의 선임	1 등 정 액	실비액
	<input type="radio"/> 동급구분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input type="radio"/> 동급구분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의 원	<input type="radio"/> 공무상의 사유 로 인하여 급행 요금 또는 침대 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input type="radio"/> 공무상의 사유 로 인하여 침대 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 등 정 액	

(한국어=마봉화)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 일 미 만	15 일 이 상 30 일 미 만	30 일
가동급 25	가동급 130	가동급 107			
나동급 25	나동급 90	나동급 78	140	170	195
다동급 25	다동급 72	다동급 58			
라동급 25	라동급 62	라동급 49			
가동급 20	가동급 114	가동급 81			
나동급 20	나동급 74	나동급 59	130	155	180
다동급 20	다동급 55	다동급 44			
라동급 20	라동급 46	라동급 37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黠홀름, 둉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토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트바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트, 자이트,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네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덴마아크, 아일랜드, 포로투칼, 회합,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투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1) 아세아주, 대양주 :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휴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루아도드,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구아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투안나,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